

의 안 발 의 서

의 번	안 호	2014 -
--------	--------	--------

수 신 : 거창군의회 의장

2014. 08. .

제 목 :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의회 회기와
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.

붙 임 :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발의자 : 이성복의원, 강철우의원, 권재경의원, 김종두의원,
표주숙의원, 변상원의원, 박희순의원, 김향란의원,
최광열의원, 이홍희의원.

서 명 날 인 서

□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직 위	성 명	날 인	비 고
의 장	이성복		
부의장	강철우		
총무위원장	권재경		
산업건설위원장	김종두		
의회운영위원장	표주숙		
의 원	형남현		
의 원	변상원		
의 원	박희순		
의 원	김향란		
의 원	최광열		
의 원	이홍희		

의안번호	제 2014 - 호
의결연월일	2014. 08. . (제 204 회)

의결사항

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

제안자	이성복 의장 외 10명
제안연월일	2014. 08. .

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4~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	2014. 08. .
제 출 자	이성복 의장 외 10명

1. 제안이유

- 매년 본회의장에서 총회 일수를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여, 현실에 맞게 연간 총회 일수와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변경
- 제1차, 제2차 정례회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

2. 주요내용

- 연간 총회의 일수 변경 (안 제2조)
 - 80일 이내 ⇒ 100일 이내
- 정례회의 회기 일수 변경 (안 제3조 제1항)
 - 35일 이내 ⇒ 50일 이내
- 집회일 변경(안 제4조)
 - ①항 제1차 정례회는 7월 10일 ⇒ 6월 20일
 - ②항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 ⇒ 12월 5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, 제47조
- (2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54조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집행부의견조회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80일”을 “100”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35일”을 “50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7월 10일”을 “6월 20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1월 25일”을 “12월 5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연간 총회의 일수)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<u>80일</u> 이내로 한다.</p>	<p>제2조 (연간 총회의 일수) ----- ----- ----- <u>100일</u> -----</p>
<p>제3조 (회기)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<u>35일</u> 이내로 한다,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·단축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 (회기) ① ----- ----- <u>50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집회일)</p> <p>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<u>7월 10일에</u> 집회한다. 다만, 의원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·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<u>11월 25일에</u> 집회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조(집회일)</p> <p>① ----- <u>6월 20일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12월 5일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법

<http://www.law.go.kr/lsSc.do?menuId=0&p1=&subMenu=1&nwYn=1&query=%EC%A7%80%EB%B0%A9%EC%9E%90%EC%B9%98%EB%B2%95&x=0&y=0#liBgcolor0>

제47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4조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